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2차 모집 공고

청년들의 주택마련 관련 부채 경감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하여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청년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청년 주택구입비 이자지원 및 청년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 **신청대상자** :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
 - * 1978. 3. 3. ~ 1998. 3. 2. 출생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797-9936)
- 이차보전금리 : 주택 구입자금(대출이자율의 최대 3%이내, 연300만원 이내)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율의 최대 3%이내, 연150만원 이내)
 - * 은행 대출금리 변동이 있더라도 이자율 3% 초과시에는 3%만 지급

2.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①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② <u>광양시 거주</u>* ③ 무주택 세대주 * 광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양시 관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할 것 - 대상주택 : ①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법 상의 주택 ②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이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 : 전세(보증금) - 이차보전 금리 : 3% - 전세(연 15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자 : 전세, 구입자금 - 이차보전 금리 : 3% - 전세(연 150만원 이내), 구입(연 300만원 이내) 	
대상자	미취업자	직장근로자(신혼부부 포함) 자영업자	직장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혼자 ② 무소득·무주택자 ③ 부모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① 취업후 5년 이내 ② 무주택 세대주 ③ 본인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① 취업후 5년이상 근로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포함	
		④ 본인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첫 영업개시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자금 : 2년(연장시 최장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자금 : 3년(기한연장시 최장 5년) - 전세자금 : 2년(기한연장시 최장 4년)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소유자

3. 지원 신청서류 접수

□ **접 수 일** : 2018. 3. 12. ~ 연중(예산 범위 내) 또는 사정변경으로
변경 공고가 있을 때까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처**

- (방문접수) 광양시 시의회 5층 전략정책담당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 (방문지 주소) 광양시 행정2길 5(광양시의회 5층)

□ **문 의처** : 전략정책담당관실(797- 1989)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⑥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구입예정, 임차계약 예정 건축물)

* 공통서류와 대상자별 추가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 : 국세청 발급)

② 임대차계약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부모)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사회초년생 추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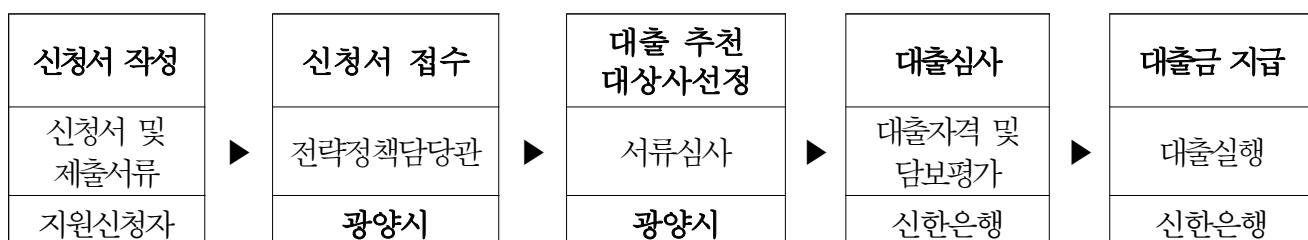
- ①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결혼한 경우 부부 모두)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③ 재직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 ⑤ 주택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
- ⑥ (임신한 경우 : 해당자만) 소견서 또는 진단서
- ⑦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⑦서류 : 해당자만 제출

○ 독신근로자 추가서류

- ①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재직증명서
-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택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

□ 신청 및 대출절차



4. 사후관리

구 분	사 유
중도 해지	관외 주소 이전, 손실계좌 처리(상환능력, 회수 불가능) 이자지원 원인행위 소멸한 경우(전세자금 이자지원 받은 후 주택구입, 주택구입 원금 전액 상환 등)
기한연장 제한	전세자금(심사), 구입자금(대출금의 10%미만 원금 상환)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5. 평가기준

항 목	세부 기준	배점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 $17m^2$ 이하	15
	주거전용면적 $17m^2$ 초과~ $30m^2$ 이하	20
	주거전용면적 $30m^2$ 초과~ $45m^2$ 이하	25
	주거전용면적 $45m^2$ 초과~ $60m^2$ 이하	20
	주거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	15
연간 소득금액	연소득 20백만원 이하	50
	연소득 20백만원초과~25백만원 이하	47
	연소득 25백만원초과~30백만원 이하	44
	연소득 30백만원초과~35백만원 이하	41
	연소득 35백만원초과~40백만원 이하	38
	연소득 40백만원초과~45백만원 이하	35
	연소득 45백만원초과~50백만원 이하	32
	연소득 50백만원초과~55백만원 이하	29
	연소득 55백만원초과~60백만원 이하	26
	연소득 60백만원초과	23
혼인 및 자녀 (가점)	3명 이상 또는 2명+임신중	25
	2명 이상 또는 1명+임신중	20
	1명 이상 또는 임신중	15
	혼인(자녀 없음)	10

* 대상자별 평가기준

- 취업준비생 : (부모)소득기준, 주거전용면적
- 사회초년생 : (본인 또는 부부)소득기준, 주거전용면적, 혼인(자녀수)
- 독신근로자 : (본인)소득기준, 주거전용면적

6.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략정책담당관실(☎797-1989)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신청 서류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